

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 규격서 일부 개정

1. 개정 이유

시범사업(1,000대) 실증 및 성과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적재 능력 및 안전장치 기능, 사후관리 등에 대한 차량 규격 보완

2. 주요내용

- ① “지침”이라는 표현은 내부의 사무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칙 (예규 등)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구매·임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정한 “규격서”로 명확하게 표기(제1조)
- ② 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는 우편배달을 목적으로 화물 운송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초소형화물자동차로 규정(제2조)
 - 시범운행에서 초소형승용자동차는 소포우편물 배달에 부적합 확인
- ③ 소포우편물 증가에 따른 배달환경 변화 및 업무 효율성(중간 보관소(함) 이용감소 등) 분석에 따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적재함(탑차) 설치를 명확히 하고 이륜차 적재중량(최대 60kg)의 2배 이상으로 최대적재량을 150킬로그램 이상 개선(제6조)
 - 적재공간에 대한 기준은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를 두고 제시했으나 도입 차량을 초소형화물자동차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기준은 삭제

- 초소형화물자동차 적재공간은 자동차규칙 제32조에 규정됨
- ④ 2019년 시범사업에 한하여 유예(선택사항)된 에어백, ABS 기능은 필수 안전장치로 규정(제7조)
- 초소형자동차는 자동차규칙 제102조 충돌시 승객보호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, 국내 에어백 설치기준이 없어서 에어백은 제작사의 선택과 기술수준(품질)에 해당됨
 - 1톤 화물차와 일부 초소형승용전기차에 설치된 사례를 준용하여 최소한 “운전석 전면 에어백”을 장착하여야 하고,
 -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(ABS)는 자동차규칙 제90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- ⑤ 시범차량에 대한 성능 개선사항으로 출발 시 사고예방을 위해 내연기관차와 유사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중립(N)모드 또는 주차(P)모드 상태에서만 시동이 걸리도록 장치 적용(제7조)
- ⑥ 주변차량의 시인성 확보로 추돌 등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적재함 후면 상단 위치에 보조제동등을 장착하고, 끝단표시등 또는 반사스티커는 선택하여 부착(제7조)
- ⑦ 좌석 높이 조절은 초소형자동차 특성상 운전석 공간 확보가 어려워 효용성이 낮아 필수사항에서 제외(제8조)
- ⑧ 운전석 방수 시트는 우천 등 제한된 상황에서 필요한 기능

으로 차량가격을 고려하여 필요시 방수 커버 활용(제8조)

- ⑨ 교환형(탈·부착 기능) 배터리는 1회 충전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나, 현재 연구개발 단계로 향후 보편화 되면 검토하여 적용(제9조)

- 220V 콘센트에 연결하여 충전하는 이동식 충전케이블은 KC 등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기본제공 품목임을 명확히 함

- ⑩ 시범운행 과정에서 차량의 고장·정비가 많고 내구성 등 품질이 낮아 안정적인 차량 운행 및 관리를 위해서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전용부품 하자보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(제11조)

- ⑪ 부칙 제2조는 2019년 시범사업에 한하여 적용된 사항으로 이후 사업은 해당 없음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<u>지침은</u> 집배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도입하는 초소형전기차의 필요한 성능 및 기능을 <u>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 <u>규격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규정한다.</u>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
1.“우편사업용 초소형전기차(이하“초소형전기차”라 한다.)”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및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(국토교통부령) 제6조제3항, 제1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4호의 <u>초소형 승용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를 포함한 초소형자동차로서</u> 「우편법」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우편물 배달 업무에 사용되는 전기차를 말한다.	1.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초소형 화물자동차로서</u> ----- ----- -----.
2. ~ 6. (생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적재능력) 초소형전기차의 적재공간(운전석 제외)은 0.4m³ 이상이어야 하고, 적재중량(차체 중량 제외)은 100kg을 초과하여야 한다.

제7조(안전장치) 집배원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8. 우정사업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전장치

<신 설>

제8조(편의장치) 집배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.

1. ~ 2. (생략)
3. 좌석 높이 및 앞뒤 조절 장치
4. 운전석 시트 방수 기능
5. ~ 6. (생략)
7. 우정사업본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편의장치

제6조(적재능력) 초소형화물전기차의 화물적재공간은 승차공간과 분리되어 덮개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측면과 후면에 갖춘 적재함이 설치되어야 하고 최대 적재량은 150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.

제7조(안전장치) 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중립(N)모드 또는 주차(P)모드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도록 장치
9. 적재함 후면 상단 위치에 보조 제동등을 장착하고, 끝단표시등 또는 반사스티커는 선택하여 부착

제8조(편의장치) -----

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--- 앞뒤 -----
4. ----- 방수 또는 방수 커버
5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삭 제>

제9조(충전방식) ① (생략) ② <u>업무수행 중 배터리 방전 등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도록 배터리 탈·부착 기능 또는 보조배터리를 장착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.</u> 제11조(사후관리) 초소형전기차의 하자보증, 부품 공급 및 사용자 교육 등 사후관리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. 1. 하자보증 : 전기자동차 전용 부품(배터리, 구동모터 등)은 납품 출고일로부터 <u>3년</u> 또는 60,000km, 일반부품은 3년 또는 50,000km으로 한다. 2. ~ 3. (생략) 부칙 제2조(2019년 시범사업에 관한 특례)	제9조(충전방식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220V 콘센트에서 충전 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케이블 (KC 등 인증제품)을 제공해야 한다.</u> 제11조(사후관리) ----- ----- -----. 1. 하자보증 : ----- ----- <u>5년</u> ----- -----. 2. ~ 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---	--